



#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October 15, 2021

법무부,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경과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첫 기업심사 중지 결정

2023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세수효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최신 세무예규판례

## 법무부,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경과

법무부는 9.14. 국제투자분쟁(ISDS)\* 대국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대응 현황을 발표한 바, 2012년 제기된 첫 사건인 론스타 건을 포함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2018년)·메이슨(2018년), 쉐들러(2018년), 중국투자자(2020년) 및 부산투자자(2021년) 등 6건의 진행 중인 사건과 기타 3건의 종료된 사건을 설명함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08년 HSBC 및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 과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 및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주장하여 손해배상(46.8억 USD)을 청구한 것임.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다양한 쟁점(관할 쟁점, 금융 쟁점, 조세 쟁점 및 손해액 산정 쟁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판정시기나 결론에 대하여 설불리 예측하기 어려우나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함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에 도입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2,600개이상의 협정에 포함됨



삼일회계법인

##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첫 기업심사 중지 결정

관세청은 9.10.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납세자보호제도 시행(2020년 7월 신설) 후 첫 기업심사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의결은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이번 사안에서 납세자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심사를 받은업체로 동일 기간에 대하여 실시하는 관세청의 기업심사에 대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업무부담을 이유로 중지 요청한 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심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하였음

## 2023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9.28. 발간한 예산정책연구(10권 3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 적용) 세수가 약 1.7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함  
정부는 2023년을 기점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류 과세하는 바, 이는 기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었던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0.1%p 인하함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4년 간의 다자협의 끝에 10.8 총회에서 필라 1·2\* 최종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하였음. 이번 합의로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이 모두 결정되었으며, 필라 1·2는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다자협정 비준 및 국내 법제화 등)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계획임

구체적으로 필라1 관련하여 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 25% 확정,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적용 허용 및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국가별 단독과세 폐지·도입금지 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음. 또한 필라2 관련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하였고, 실질활동지표인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의 5년 간 적용 제외, 원천지국과 세규칙 최저한세율을 9%로 확정 및 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을 2024년으로 유예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음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최신 세무예규판례

###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시 사업영위기간에 사업목적 신축공사기간 포함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1항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요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 ③)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 합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임대업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동 공사기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본 사안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행전안전부는 공사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한 점, 임대용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질의의 공사기간이 감면규정의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지방세특례제도과-1604, 2021. 7. 7.)

이번 유권해석은 공사기간을 사업영위기간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공사기간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백을 사업영위기간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심2013자/0011, 2013. 5. 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2018. 12. 12.)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1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합병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승계받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는 바, 이번 유권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세제-2127, 2020. 2. 10.)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벤처기업의 판정시점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분할 납부 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선택 특례 규정(조특법 §16의 2 ~ §16의 4)을 두고 있음

이번 사안의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조특법 §16의 2 ~ §16의 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조특법 §16의 2 ~ §16의 4)에서 정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2021. 8. 31.)

이번 유권해석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판정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이 아닌 부여시점임을 명확히 한 해석사례로 판단되며, 이번 사안과 반대의 사실관계, 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부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납부 특례(조특법 §16의 3)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인 바,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2021. 3. 8.)

# Contacts

## 국제조세

이종현 709-0598  
alex.lee@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이응전 3781-2309  
eung-jeon.lee@pwc.com

박종우 3781-0181  
jongwoo.tice.park@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owell@pwc.com

**Tax Managed Services**

심수아 3781-3113  
sooa.shim@pwc.com

**글로벌 인력관리 및 세무자문**  
(People and Organisation)

박주희 3781-2387  
Ju-hee\_1.park@pwc.com

##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허윤제 709-0686  
yun-je.heo@pwc.com

성창석 3781-9011  
chang-seok.sung@pwc.com

서연정 3781-9957  
youn-jung.seo@pwc.com

오혜정 3781-9347  
haejung.oh@pwc.com

진병국 709-4077  
byungkuk.jin@pwc.com

홍창기 3781-9489  
chang-ki.hong@pwc.com

##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박수연 709-4088  
soo-yun.park@pwc.com

##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이종형 709-8185  
Jonghyung.lee@pwc.com

##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pwc.com

김운규 3781-9304  
woon-kyu.kim@pwc.com

##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양인병 3781-3265  
in-byoung.yang@pwc.com

##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 이전가격 & 국제통상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김찬규 709-6415  
chan-kyu.kim@pwc.com

##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김홍현 709-3320  
Hong-hyeon.kim@pwc.com

이동열 3781-9812  
dong-youl.lee@pwc.com

##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정재훈 709-0296  
jae-hoon\_3.jung@pwc.com

##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3489-3001  
heui-tae.lee@pwc.com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